

경기도 공고 제2020 - 240호

###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그ㅂ	구분 분 야		계급	선팀	발예정	인원	(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丁正	ᄑ	<b>о</b> г	711 🖽	총계	양성	남	여	시참피국	시험시인
	총	계		860	99	690	71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소방사	515		500	15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 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0 ~ 11:40 (100분)
		소 계		345	99	190	56		
	선박기	기관사	소방사	2		2			
	하	학	소방장	2	2				
			소방사	10	10				
	예	방	소방장	4	4				
	건		소방사	12	12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S사 및 ·별조사	소방사	50	50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을 하는 경역	
			소방사	2		1	1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이 등으로 한다.	[ <b>3과목]</b> 10:00 ~ 11:00
경력	구	급	소방사	138		83	55		(60분)
경쟁		조	소방사	50		50		소방장・교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채용	정보정	!보기술 !보보안	소방사	3	3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통신정	보보안	소방사	2	2				
	통계조	사분석	소방사	3	3				
	자동치	ト 운전	소방사	50		50			
	심리성	상담사	소방교	8	8				
	법	무	소방경	3	3			필기시험 면제	
	항공	조종사	소방위	3		3			하고 버스
	항공경	정비사	소방장	1		1		필기시험 면제	항공분야 추후 별도공고
	운항관	관리사	소방교	2	2				ㅜㅜ ㄹㅗㅇㅗ 



## 2 시험일정

### 가.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법무분야 제외)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필기시험	3. 20.(금)	3. 28.(토)	5. 8.(금)
	271716	※ 점수 사전공개 : 4. 21.(화) ~ 4. 23.(목)		5. 0.(口)
○ <b>접수기간</b> 2. 10.(월) 09:00 ~	체력시험	5. 8.(금)	5. 18.(월) ~ 5. 29.(금)	6. 10.(수)
2. 12.(수) 21:00 까지	신체검사			불합격자 개별통보
○ <b>취소마감일</b> 2. 15.(토) 21:00 까지	인ㆍ적성검사	6. 10.(수)	6. 17.(수) ~ 6. 26.(금) ※ <u>서류전형</u> 은 추후 별도 시행	면접시험 활용
	서류접수			불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7. 15.(수)	7. 20.(월) ~ 7. 31.(금)	8. 28.(금) (최종합격자)

### 나.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 접수기간	신체검사	2. 19.(수)	2. 25.(화) ~ 2. 27.(목)	불합격자 개별통보
2. 10.(월) 09:00 ~ 2. 12.(수) 21:00 까지	서류접수		Z. ZJ.(≒) ~ Z. Z1.(¬)	
○ 취소마감일	인·적성검사		3. 10.(화)	면접시험 활용
2. 15.(토) 21:00 까지	면접시험	3. 25.(수)	4. 1.(수)	4. 3.(금) (최종합격자)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 해당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소방 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알림마당」의「고시/공고」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s://119.gg.go.kr/academy)「시험정보」의「신규채용 / 공고・고시」란에 별도 공고(공지)

#### 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 공개기간 : 2020. 4. 21.(화) 09:00 ~ 4. 23.(목) 24:00

- 공개방법 :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s://ggfire.jinhakapply.com)」

(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공개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 라. 필기시험 점수 이의제기

○ 신청기간 : 2020. 4. 21.(화) 09:00 ~ 4. 23.(목) 24:00

- 신청방법 :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로그인 → 성적조회 → 성적 이의제기)

- 신청내용 : 사전공개 점수와 상이한 본인 채점점수 및 가점 기재

○ 답변방법 : 2020. 5. 6.(수) 09:00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공개

⇒ 추가 이의 신청은 본인이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방문 확인

### 3 응시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O 공 통 : 【붙임 1】 참조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붙임 2】참조
  -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 공고 이후 법령 제·개정 시 변경된 법령에 의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u>감봉</u>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은 응시 가능함.



- 나. 거주지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9항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① **2020년 1월 1일 전**(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0년 1월 1일 전**(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사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야별	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2. 12. 31.
	소방경 (법무분야)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0.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별표 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u>0.3 이상</u>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u>0.8 이상</u> 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함

####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최초시험(필기)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 <u>최초시험 예정일까지</u>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다만, 근무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로 함.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공고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직위·담당업무·근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현 근무처 경력은 재직증명서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u>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급여를 받지 않은 자는 경력 불인정
- 모든 증명서는 서류제출 최종일 기준 <u>3개월 이내</u>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최초시험 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분	·0‡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b>기관사</b> 방사)	◇ 기관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선박직원법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화학	소방장	<ul> <li>◇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유사 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 (화학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ul>
	소방사	<ul> <li>◇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li> <li>※ 유사 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 (화학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ul>
-	<b>방</b> 방장)	<ul> <li>◇ 안전관리, 건축, 전기 중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안전관리 중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 : 소방</li> <li>※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li> <li>※ 전기 중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li> <li>◇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포함)・건축과(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포함)・전기과(전기공학과 포함)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유사 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 (소방・건축・전기 각 분야별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ul>
<b>건축</b> (소방사)		<ul> <li></li></ul>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안전 관리         안전관리 직무분야 지구분야 자격증         기술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전기 또는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 소방설비(전기 또는 기계분야), 화재감식평가			
화재조사 및	화학         식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학 직무분야 지구증         기술사 기능장 기상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공 기상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소 방 특별조 <b>사</b> (소방사)	★ 전기 중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 중직무분야 공직무분야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기능장 전기 기능장 전기 기능장 전기 기능자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소방			
<b>구급상황</b> <b>관 리 사</b> (소방사)	<ul> <li></li></ul>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ul> <li>◇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li>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b>구 급</b> (소방사)		①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자 중 특수훈련을 받은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b>구</b> : (소방/	<b>조</b> 나)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정보	◇ 정보통신 직무분야 중 정보기술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정보통신	기술	▶ 정보기술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기능분야         기소         박테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자격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소방사)		◇ 정보통신 직무분야 중 정보보안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관리,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보안사고 분석 대응 및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안	▶ 정보보안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기능분야     기 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자격증     산업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b>통계조사</b> <b>분 석</b> (소방사)	<ul> <li>◇ 통계분야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통계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li>※ 임용예정계급: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 【붙임 3】참조</li> </ul>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b>자동차</b> <b>운 전</b> (소방사)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 인정되는 차량) ①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명 이상) ②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2톤 이상) ③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④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b>심리상담사</b> (소방교)	<ul> <li>◇ 상담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심리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임용예정계급:「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 * 【붙임 3】참조</li> </ul>
법 무 (소방경)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 유사학과 인정 기준: 해당 분야 전공과목 1/2 이상은 졸업연도 기준으로 응시자가 졸업한학교와 타 학교(상기 공고문에 명시된 학과)를 서로 비교한 공문(담당자명, 연락처, 직인 포함)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중 <u>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u> 준하는 기관 범위 :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의 정부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년도에 지정한 기관<sup>\*</sup>에 한함
  - \*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사이트 참조
-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서식**: 【붙임 4】 참조



### 4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0. 2. 10.(월) 09:00부터 ~ 2. 12.(수) 21:00까지 <u>※ 인터넷 접수만 가능</u>
  - 접수취소기간 : 2020. 2. 10.(월) 09:00 ~ 2. 15.(토) 21:00까지
  -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붙임 15】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됨.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업체인「㈜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s://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 ※ 접수방법은「㈜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 응시표 출력은 2020. 3. 20.(금) 09:00부터(단, 법무분야는 2020. 2. 19.(수) 09:00부터) 「㈜진학 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
- 다. 응시수수료 : 소방경 및 소방장 7,000원, 소방교 및 소방사 5,000원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 라.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으로 등록하여야 함.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 일부가 나타 나지 않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교체 불가

#### 마. 가산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붙임 5, 6】 참조

구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의사상	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적용	가점은 <b>1개만 적용</b> ◆ <b>공채 및 경채시험 모두 적용</b>		
자격증 등	자 격 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경채시험 제외)		
소지자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필기시험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b>최대 5%까지만</b> 적용		
※ 취업지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표기 :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s://ggfire.jinhakapply.com)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가산특전 자격의 종류 및 가산비율·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라며, 원서접수 종료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전일[2020. 3. 27.(금) 24:00]까지 유효하게 입력된 사항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단, 법무분야는 2020. 2. 24.(월) 24:0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입력
- 따라서,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을 입력하여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람.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

○ 자격증(면허증) 사본 입력 방법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별도 안내

####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O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됨.
- 공통자격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번호** 및 **운전경력 증명서**를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이후 운전면허 취득(발급)자는 **필기시험일(2020.3.28.)까지(단, 법무분야는** 신체검사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운전경력 증명서를 입력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
- O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중복 또는 복수 접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 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원서접수 취소는 2020. 2. 15.(토) 21:00까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단, 결제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환불 조치.

####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취소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 (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s://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함.



### 5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 체력 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무 분야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화학(소방장)·예방(소방장)·심리상담사(소방교) 분야: 필기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기타 분야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서류전형에 한하여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 가. 필기시험 (법무 분야 제외)

- O 배점 및 문항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구분	분야	시험과목
공개경쟁 채 용	소 방	<b>필수(3)</b>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 용	모든 분야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
- 선택과목 출제 범위

과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붙임 7】참조
소방관계법규	공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ᅩᆼᆫᆀᆸㅠ	경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약칭)(법, 시행령)
사 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학 I , 화학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I,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됨.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아래 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함.
    - (소방분야 1.5배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구급분야 1.5배수,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구조·자동차운전분야 2배수, 기타분야 3배수 범위)
  -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붙임 8】참조



- 나. 체력시험 [법무(소방경), 화학(소방장) · 예방(소방장) · 심리상담사(소방교) 분야 제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 \* 【붙임 9】참조
    -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5~10% 범위)
    -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10. 11】 참조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붙임 12】참조

#### 다.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인ㆍ적성 검사

○ 신체검사 :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수수료 응시자 부담)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별표 3에 의함.【붙임 13】참조
- ※ <u>색각 이상자의 경우</u>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개인병원 제외)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 바람.
-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
- O 인·적성 검사
  -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 라. 면접시험

-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인·적성 검사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붙임 14】참조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및 제47조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 단, 법무분야는 면접시험 성적 100%로 하고, 화학(소방장)·예방(소방장)·심리상담사(소방교)는 필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2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 <u>구급분야 남·여</u>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타 성별에서 선발함.
-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하기 바람.
-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허위 또는 미(오)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 (등록) 하여야 함.
  -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s://ggfire.jinhakapply.com)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음.
- 라.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채점기(리더기) 인식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마.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PDA, 전자계산기, 전자 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 할 수 있음. ※ 전자기기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 바.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 시 OMR 카드 리더기에서 오류사항(본인 귀책으로 인한 응시번호, 생년월일, 책형, 분야코드, 공채선택과목코드 미인식) 발생 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알림마당」의「고시/공고」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시험정보」의「신규채용 / 공고·고시」란에 공고(공지)함.
  -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031-329-0321~5)으로 문의 바람.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등

-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 계급환산기준표
- 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서식(대학교용, 대학원용)
- 5.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8.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9.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10.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1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1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1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14.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전 화: 031) 329 - 0321 ~ 5

▶ 홈페이지: https://119.gg.go.kr/academy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봉명리)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 : (주)진학어플라이

▶ 전 화: 1544-7715

▶ 홈페이지: https://ggfire.jinhakapply.com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https://119.gg.go.kr/academy /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 • 고시

## 응시 결격사유 등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3.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 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급환산기준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

구분	국가·지방 공무원	경찰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계급	또는 별정직 공무원	- 80 로 공무원	군인	초·중·고등 학교 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기업체
소방령 지방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지방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대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소방위	6급	경위	중위 소위 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대리
소방장 지방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 〈비 고〉

-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 등 한다.
- 2.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재채용 등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서식)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	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	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경기도 공고문 (2020.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년도 졸업	대학	원 학과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경기도 공고문 (2020.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0년 월 일

#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 경기도지사 귀하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 기준일 :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 <u>적용범위</u>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u>가점 산정 인원</u>: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참고



#### 2. 의사상자 등

- 기준일 :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호보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u>적용범위</u>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u>가점 산정 인원</u>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8) 및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확인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이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 ※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가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지방 공무원임용령」제56조 참고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ol> <li>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기술사・기능장</li> <li>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li> <li>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li> <li>잠수기능장</li> <li>의사, 변호사</li> <li>소방시설관리사</li> </ol>	<ol> <li>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기사</li> <li>5급 또는 6급 항해사 · 기관사</li> <li>응급구조사(1급), 간호사</li> <li>소방안전교육사</li> </ol>	<ol> <li>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li> <li>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li> <li>「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li> <li>응급구조사(2급)</li> </ol>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유의사항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격증 + 사무관리 = 합산, 0.5할(5%) 초과시 0.5할(5%)만 가점 인정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각각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 5%) 점수 가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최종합격(발급)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합격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2)

TIPHOL	**************************************			기술·기능 분야(510)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 (61)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5퍼4	센트	3퍼센트	1퍼·	센트
		71+7-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신축기계르미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71 + 12 11	71+ 12111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	E-1-10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141 건축	건축품질시험				
	(29)					도배
					방수	미장 방수
					0.7	8 구 비계
14 건설	-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6/98)						온수온돌
(0, 30)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소 그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기8기군 년 로더운전
	146 건설기계운전 (11)					롤러운전
	(11)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771167131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크미포먼		크미포인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기계정비	기계정비
	(31)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 ′			느어크레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8기계 8리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 기계	163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처ㄷ뉘라져비
(7/79)	(5)		골도사당성미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164 조선					선체건조
	(6)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항공기관		항공	항공	
		ㅎㅎ기ゼ				항공기관정비
	165 항공	항공기체				
	(8)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166 자동차		-10/10-1	-10/10-1	. 10.16-1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차체수리
	(8)	차량				
	<u> </u>			그린전동자동차		
		취고		정밀화학		
18 화학	181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2/12)	(9)			와락뉴세조 화학분석	ㅋㅋㅠ에프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6)	(61)	5퍼션	#I <u>E</u>	3퍼센트	1퍼4	네 <u>트</u>
		건축전기설비	<u>-                                      </u>		1	
	i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201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16)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		필도전기전호 광학
				07	광학기기	07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20 전기·전자				로봇하드웨어개발		
(2/39)		11003# + ##01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이고	이고	
	202 전자			의공	의공	의료전자
	(23)			전자계산기		크표 근시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_ I IIE I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71 71 71 F
					20표리티케바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u></u> 빅데이터분석		30-2926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211 정보기술	정보관리				
	(15)					정보기기운용
21 정보통신		쿼ㅠ티비႓테ㅇㅇ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3/31)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6)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 (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가스	<u>통신설비</u>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 건설안전	/1=	건설안전	기— 건설안전	/1=
		기계안전		CECL	CECL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251 안전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27)	이가고하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전기안전		인간공학		
25 안전관리	ļ.	화공안전				
(2/42)		, , , , ,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누설비파괴검사		
		비교기가다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252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 <b>사</b>		
	(15)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차위리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	
				기상감정		
		기상예보				
26 환경에너지 (2./27)	262 에너지·기상	방사선관리		이커크		
(2/37)	(13)	원자력발전		원자력		
		권사덕달신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1		- 파트(스타트)	: 기를 열 모임	: -n-r-1	-11-12-12-12-1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분야	내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재난관리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연소이론	2) 연기 및 화염	<ul><li>연기의 정의</li><li>연소 가스</li><li>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li>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li>폭발의 조건</li> <li>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폭연과 폭굉</li> <li>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분야	내용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화재이론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				
소화이론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7]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 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math>-1$ 

-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7]

종목	성별		평가점수										
07	ÖZ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kg)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kg)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급으로 굽히기 (cm)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멀리뛰기 (cm)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 몸 일으키기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회/분)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 복 오 래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달리기 (회)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비 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 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u>별첨의 서식(추후 공지)</u>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u>별도 지정일까지 신청</u>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 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토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I. 금지약물(총 24종)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 methenolone
- ▶ stanozolol
- methasterone(17 $\beta$ -hydroxy-2 $\alpha$ ,17 $\alpha$ -dimethyl-5 $\alpha$ -androstan-3-one)
- ▶1-testosterone(17 $\beta$ -hydroxy-5 $\alpha$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 ▶ methadone
- ▶ morphine

-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 pethidine

### 田.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sup>1)</sup>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ul> <li>○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li> <li>○ 측정 단위: kg</li> <li>○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배 근 력 (kg)	<ul> <li>○ 측정 장비: 배근력계</li> <li>○ 측정 단위: kg</li> <li>○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li>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li> <li>측정 단위: cm</li> <li>측정 방법</li> <li>-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li> <li>-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li> <li>-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li> <li>-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li> <li>-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li> <li>-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li>※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li> </ul>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li>○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cm</li> <li>○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li>○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회</li> <li>○ 측정 방법: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li>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녹음 CD : 별도</li> <li>측정 기록 : 단위(회)</li> <li>측정 방법</li> <li>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 비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구 분	내 용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다. 진성적혈구 과다증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기.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b>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b> 이상인 사람
13. 눈	<ul> <li>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li> <li>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li> <li>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li> <li>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li> <li>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li> </ul>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del>운동</del>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5]

#### I. 평가요소 등

○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1단계 (집단면접)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개별면접)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Ⅱ.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u>40% 미만의</u> 점수(C<sup>0</sup>,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공채·경채)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 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력시	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사항		당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발급 기관 - 학력시	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남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시	당무원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남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  원대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성명, 주민번호, 보훈번호 등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